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－1390호

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공고

「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」에 따라, 2026년도 하반기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7월 27일

대 전 광 역 시 장

1. 지원규모 : 250억원(농협은행협력자금)

2. 지원대상

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「중소기업기본법」의 중소기업으로 「별첨1」의 지원업종에 해당하면서 「별첨2」의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업체

※ 재해중소기업 평가 제외

3. 지원내용

※ 분양계약금 등 기 투자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음

가. 시설투자자금(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다음의 자금)

- 창업 중소기업의 공장 또는 사업장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
- 지식산업센터 등 임대공장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
- 기계기구 등 생산(서비스, 전산망)시설의 신규 구매·개체 및 기존공장의 증·개축에 소요되는 자금
-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관리를 전산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전산망을 구축하거나 재구축(보수)하기 위한 시설자금
- 지식산업센터 공장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민간 및 공공사업자의 건축자금

나. 운전자금(시설투자와 연계한 운전자금으로 시설투자자금의 40%이내)

※ 대전광역시 지정 유망중소기업은 시설투자와 연계되지 않은 경우에도 운전자금 한도액 범위 안에서 1회 지원 가능

4. 지원조건 및 한도

가. 융자기간

- 시설투자자금 : 8년 이내(거치기간 3년 포함)
- 운 전 자 금 : 3년 이내(거치기간 1년 포함)

나. 융자금리 : **5.0%**(1년 단위 변동금리, 농협협력자금) ※취급수수료 0.7% 포함

- 2026년 1월 이후 신규대출자
- **이차보전 : 일반기업 2.0%, 우대기업 2.5% ~ 3.0%**

※ 우대기업 : (별첨3)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1회에 한하여 2.5% ~ 3.0% 이차보전

다. 융자한도

- 시설투자자금 : 15억원 이내 (둔곡·신동·서구 평촌지구 25억원 이내,
 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50억원 이내)
- 운전자금 : 3억원 이내(둔곡·신동·서구 평촌지구 및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5억원 이내)

※ 시설투자와 연계한 운전자금으로 시설투자자금의 40%이내

라. 융자실행: 자금지원 추천(결정)일로부터 6개월

5. 지원 제외업체

가. 융자받은 업체 중 지원규모 초과업체

나.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, 휴·폐업 중인 업체

다. '금융기관 여신운용세칙'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

라. 자산총액 5,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을 30%이상 소유한 최다 출자자인 업체

마.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: 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

바. 중앙부처 및 시 정책자금(창경, 경안) 최근 5년간 100억 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

사. 전년도 및 당해연도 추천서 발급 후 대출 미실행 기업

아. 환수 등 조치를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업체(뒷장 참조)

자. 재무제표 상, 부채비율((부채총계/자본총계)*100)이 마이너스(자본잠식)인 업체

차. 신청일 현재 지방세, 국세 체납 사실이 있는 기업(완납 후 신청 가능)

카.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평가기준표 평가결과 50점 미만인 기업

6. 신청 및 접수

가. 접수기간 : 2026. 7. 27. ~ 12. 31.

※ 단, 시 예산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

나. 신청방법 : 방문 신청(대전시 동구 계족로 151 (대동 549번지) 대전지식산업센터 4층 411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)

- 신청양식 : 『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』 접속(http://www.djbea.or.kr/) → 사업공고 →공고명(검색 : 자금명 입력) → 상세보기

다. 신청 구비서류: 별첨 3

※ 추천서 발급 소요기간 :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(신청서 접수 후 현장실사 진행)

※ 시설투자자금(부지매입, 건축, 기계장비설치 등) 현장실사 필수 진행

라. 기타사항

-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함
- 신청 전에 거래은행과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·부 사전 협의 시 편리할 수 있음

7. 사후관리

가.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지원자는 자금지원의 관리실태 조사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등 사후관리에 협조하여야 함

나. 다음에 해당할 경우 **자금 및 이차보전액 환수 및 향후 추천 제약**

(향후 1년간 추천 제약)

- ▸ 기한 내에 추천서를 미실행한 경우
- ▸ 추천서 발급 후 인정요건이 변동된 경우
- ▸ 사업보고서 제출 미이행 및 사후관리 협조 불이행

(향후 3년간 추천 제약)

- 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하였거나 지급받은 경우
- ▸ 신청·지원 목적외 다른 용도의 자금으로 활용
  (특수관계인 간 거래·계약, 상호·대표자·업종 등 변경내역 미신고 등)
- ▸ 기타 부당 사용
- ▸ 융자금의 상환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8. 유의사항

가. 자금지원 결정업체에 대해서는 주거래 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은행에서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금 연체사실,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 여부와 채권보전을 요구할 수 있음(부동산 또는 보증서 담보제공 등)

나. 대출취급기한은 지원 결정일 부터 6개월 이내(단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내 승인 후 연장가능)

※ 지원 결정일로부터 대출취급기한 내 대출받지 못할 경우 추천서 효력 상실

※ 대출 취급 기한 중 취소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, 추천서 유효기간 내에 반드시 공문을 통해 취소 신청서를 제출

다. 사업장이 휴업·폐업 또는 대전 외 지역으로 이전 시 이자 지원 중단

라. 신청 목적 외 다른 용도의 자금으로 활용 시 자금 및 지원된 이차보전액은 환수 조치

9. 상담 및 문의

○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(☎ 042-380-3021, 3000)

별첨 1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자금 지원업종

구 분	세부지원 대상업종(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11차)	비 고
제조업	①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(10~34) 단,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(33402),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(33409) 지원제외 ②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공장설립 인·허가를 받은 기업 ③ 유휴공장(법원, 한국자산관리공사, 금융기관이 경매(공매) 물건을 낙찰 받은 경우)을 매입하려는 기업	전업율 30% 이상
제조업 관련 서비스업	① 도로화물 운송업(493), 해상운송업(501) * 【외항 여객 운송업(50111) 및 내항 여객 운송업(50121)제외】, 화물 취급업(5294), 보관 및 창고업(5210), 화물자동차 터미널 운영업(52913), 화물운송 중개,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(52991), 화물 포장,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(52993) ②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(763) *【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·장비 임대업(7632)은 제외】 ③ 산업설비,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(74212) ④ 폐기물 수집·운반업(381), 폐기물 처리업(382)	전업율 50% 이상
건설업	ㅇ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자 (자재구입비, 인건비 등 운영자금)	
지식산업	①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(582) ② 연구개발업(70) ③ 엔지니어링서비스업(7212)	
영상산업	ㅇ 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(5911)	

※ 상기 지원 해당 업종코드에 한하여 지원 대상으로 인정함.